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구미경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4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이 2024년 1월 23일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항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,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울시 조례에도 해당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은, 서울시를 포함한 도심지역에서 집비둘기를 비롯하여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 등에 의한 물적, 인적 피해와 이로 인해 증가하는 민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.

□ 도심지역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여 그 분변이나 털이 문화재나 건물 외벽을 부식시키고, 에어컨 실외기에 쌓인 털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며,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위생상 인체에 뇌수막염이나 살모넬라를 일으킬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,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확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.

□ 환경부의 『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(2023)』에서도 영국, 스위스, 이탈리아, 프랑스, 미국, 호주, 벨기에, 캐나다, 독일 등의 국가에서 집비둘기에 대한 먹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

악되었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규정된 ‘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’을 대상으로, ‘포획’이라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‘먹이주기’를 금지함으로써, 시설물과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합니다.

□ 나아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금지가 아니라, 군중이 많이 모이는 도시공원이나 광장, 문화재 주변 등 시장의 재량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여, 시민의 먹이주는 행위의 자유와 제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제1조에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,
-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,
- 제3조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,
- 제4조에서는 그 책무를 구체화하는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의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제5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제6조에서는 시민들이 금지구역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,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제7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홍보를
- 제8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는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장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조문의 문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이상의 제안서를 바탕으로,

부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□ 감사합니다.